



특 집

분뇨처리 종류별로 보는 최근 변화와 동향

축산분뇨의 적정 관리방향

정

부에서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축산분뇨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는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모든 축산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1. 국토환경용량 범위내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환경용량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오염원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축산업도 발생된 폐수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적정규모 범위 내에서 사육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농경지 현황, 가축별 사육두수, 폐수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축산환경용량과 적정 사육두수를 산정하고,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면허제와 같은 총사육두수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박 광 호 사무관
환경부 생활오수과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축산폐수관리대책 마련

축산폐수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사육두수, 수계현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의 처리는 자원화 방법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절한 처리방법이기는 하지만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산분뇨의 자원화도 해당 지역 토지의 성분, 재배작물, 시비가 가능 농경지 면적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 등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는 축산시설의 신규입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시설도 감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에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정밀조사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및 자치단체가 적절한 처리방법을 결정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축산폐수 처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3. 축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축사구조로 전환

우리나라의 돼지 축사구조는 축분과 뇨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슬러리 축사가 대부분으로 축산분뇨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축분과 뇨가 분리되지 않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20,000~30,000mg/l의 고농도로 정화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합수율이 높아 자원화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슬러리 돈사가 축사관리의 간편함 등의 이점이 있어 선호할지 모르지만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축사의 구조를 축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축분 분리

배출 축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4.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폐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규제미만 축산농가는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폐수발생량도 적고 산재되어 있어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도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고 있는 양은 미미한 실정이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폐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 축산폐수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사육두수, 수계현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축산환경용량 범위내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고, 축산폐수는 우선적으로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축사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규제 미만 축산농가의 분뇨가 공공처리시설로 확대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자치단체·생산자단체·축산농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가의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거는 자치단체에서 수거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5.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

개·염소·타조 등 미규제 가축의 사육두수 및 농가수, 분뇨배설량 및 오염부하량, 사육형태 등을 분석하여 규제 대상 가축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육동물의 규제기준을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면적에만 적용하고 있어 한정지역의 분뇨 과다발생 등 밀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면적규제와 더불어 사육두수도 병행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질소·인인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만 있다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많다. 이를테면 운동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젖소 같은 가축은 운동장시설에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고, 운동장시설의 분뇨를 주기적으로 청소만 하여도 오염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관리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아야 하겠다.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야겠지만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고의적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엄격한 범집행을 통하여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

리하지 않고는 축산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축산환경용량 범위내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고, 축산폐수는 우선적으로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자치단체·생산자단체·축산농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산폐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배치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모두의 끊임 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양봉**